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6. 5.



국립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입 학 처]

목 차

1. 전형 일정	1
2.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2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4. 모집 요강 교부 및 원서 접수	6
5. 제출 서류	7
6. 전형 및 평가 방법	9
7. 선발 방법	10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0
9. 지원자 유의 사항	11
10. 기타 사항	12

【 제 출 서 식 】

[서식 1] 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14
[서식 2] 학력조회동의서	15
[서식 3]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	16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8
[서식 5]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19

1.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모 집 요 강 교 부		2026. 5. 29.(금) ~ 9. 11.(금)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scnu.ac.kr/iphak/main.do)	모집요강 별도 교부 없음
입 학 원 서 및 제 출 서 류 접 수	창 구 접 수	2026. 9. 7.(월) ~ 9. 11.(금)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처	2025. 9. 1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우 편 접 수		(우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입학처	
서 류 심 사		2026. 9. 21.(월) ~ 10. 8.(목)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처	
면 접 (실 기) 고 사		2026. 10. 22.(목)	○ 해당 모집단위	
합 격 자 발 표		2026. 11. 20.(금) 18:00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scnu.ac.kr/iphak/main.do)	합격자 명단 및 유의사항 확인
등록금 납부 및 등록		2027. 2월 중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 ※ 전형일정 및 세부일정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간호학과, 약학과,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전체 학과는 모집대상에서 제외
- ※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선발 단 정원외 모집의 경우 입학정원 제한 없음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구분	모집단위	개설전공	입학 정원	모집 인원	비고
본부 직속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자연)		110명	11명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선발
	식품영양학과		30명	3명 이내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30명	3명 이내	
	건축학부		25명	2명 이내	
그린 스마 트팜 스쿨	생명산업과학분야	농생명과학전공	273명	27명 이내	
		산림자원학전공			
		조경전공			
		동물자원과학전공			
		원예학전공			
		식품공학전공			
		농업경제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조리과학전공			
바이오한약자원학전공					
애니 메이션 문화 콘텐츠 스쿨	사회과학분야	경제학전공	255명	25명 이내	
		무역학전공			
		경영학전공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회계학전공			
		물류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인문분야	글로벌중국어학전공	85명	8명 이내		
	일본어일본문화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예체능분야	문예창작학전공	137명	13명 이내		
	사회체육학전공				
	음악예술융합학전공				
	사진미디어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우주 항공 첨단 소재 스쿨	공학분야	토목공학전공	367명	36명 이내	
		환경공학전공			
		기계우주항공공학전공			
		첨단신소재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인공지능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화학전공			
		에너지응용공학전공			
합계			1,312명	31명 이내	총 입학정원 (1,573명)의 2% 이내 선발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모집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 기본 학력 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하나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기간은 출입국 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출장, 병원 진료 등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일수에 포함

※ 학생이수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체류기간: 학생(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부모(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 재외국민 국적: 지원자격 산정 기간 및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필수

나. 입학 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 공통 학력 요건 >

외국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북한이탈주민 제외)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도 인정함[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기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다음의 언어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취득자 - 국립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한국어 연수과정(정규과정) 중급 이상 수료자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다음의 언어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취득자 - 국립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한국어 연수과정(정규과정) 중급 이상 수료자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부·모·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추후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지원 바람

다. 지원 요건에 대한 세부 인정 기준

구분	기준
입학 허용 기간	① 자격 및 학력 인정기간 기준시점: 202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② 공통학력요건 기준시점: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한 자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외국학교 인정기준	①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②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함

구 분	기 준										
보호자 • 체류기간 • 거주기간 • 근무기간	① 지원자의 지원자격 인정 기간인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거주·근무한 경우에 한해 거주 및 근무 기간으로 인정함(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② 체류·거주·근무기간은 해당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체류기간: 외국에서 체류(출입국증명서 상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한 기간 •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에 기재된 최초 입국일 등으로 거주사실 확인 • 근무기간: 증명서 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등)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영주 기간	•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인정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외국인 인정 기준	• 원서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②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학력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	① 모든 지원자는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내·외에서 이수해야 함.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외국에서 수학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대상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총 23학기, 11년6개월 이상 충족)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12년 미만인 경우 2)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최종이수 학제</th> <th style="text-align: left;">인정 여부(인정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10학년 이하</td> <td>미인정</td> </tr> <tr> <td>11학년제</td> <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 </tr> <tr> <td>12학년제</td> <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 </tr> <tr> <td>13학년 이상</td> <td>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 </tr> </tbody> </table> * 1개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제를 이수한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③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④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최종이수 학제	인정 여부(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최종이수 학제	인정 여부(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구 분	기 준												
학력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	<p>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p> <p>⑥ 외국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 신입학이 아닌 전학한 경우만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p> <p>⑦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2학년제 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13학년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등학교 과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1학년 ~ 6학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Year2 ~ Year7과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학교 과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7학년 ~ 9학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Year8 ~ Year10과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과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10학년 ~ 12학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Year11 ~ Year13과정</td> </tr> </tbody> </table> <p>⑧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p> <p>⑨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p>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Year2 ~ Year7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Year8 ~ Year10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Year11 ~ Year13과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Year2 ~ Year7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Year8 ~ Year10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Year11 ~ Year13과정											
재외국민 자격인정 범위	<p>①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p> <p>② 외국 근무 상사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 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p>③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p>④ 현지법인 근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p>⑤ 현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p> <p>⑥ 해외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p>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4. 모집요강 교부 및 원서 접수(지원 서류 포함)

가. 모집 요강 교부

- 1) 기간 : 2026. 5. 29.(금) ~ 9. 11.(금)
- 2) 장소 : 입학안내 홈페이지(scnu.ac.kr/iphak/main.do)에서 확인(별도 교부 없음)

나. 원서 접수

- 1) 기간 : 2026. 9. 7.(월) ~ 9. 11.(금) 18:00까지
- 2) 접수 장소
 - 창구 접수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지원과(대학본부 6층 603호)
 - 우편 접수 :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지원과

※ 2026. 9. 1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3) 전형료 : 없음

5. 제출 서류

가. 공통 사항

- 1)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원본 및 사본을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원본은 확인 후 반환)하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 확인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재외국민의 현지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과 영사확인 중 선택발급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영사민원실 02-2100-7600, 법무부 02-720-8027

- 외교부(www.0404.go.kr)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페이지

나. 제출서류

1)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모집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서류		1	<서식1> 입학원서	
		3	<서식2> 학력조회동의서	
		2	<서식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6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7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9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10	여권 사본(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제외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12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해당자에 한함
추가제출서류	국외 파견 재직자	1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	
	현지 취업자	1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	
		2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자영업자	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 표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입학 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서류	1	<서식1> 입학원서		
		<서식2> 학력조회동의서		
	2	<서식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제외	
	8	여권 사본	북한이탈주민 제외	
	9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해당자에 한함	
추가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학생)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2	외국국적 증명서	시민권, 여권 사본 등
		3	거민신분증	중국인에 한함
		4	<서식5>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붙임파일 추가서류 포함)	
		5	어학능력 입증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 이주민	1	국적취득사실증명서	
		2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어학능력 입증서류	
	북한이 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재정 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의 미화 \$13,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13,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유학경비 부담서약서 ②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수입 증명서

※ ★ 표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현황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즈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025. 3. 30. 기준)

6. 전형 및 평가 방법

가. 전형 방법 : 1단계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격 확인 후 2단계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면접(실기)고사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모집 계열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비고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학과	면접(실기)고사	100%	합격 여, 부 판단

다. 면접(실기)고사

- 1)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면접에 응시하여야 하며(지원자격 미달자 제외)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합격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2) 면접은 지원자 1인당 2명의 면접 위원이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등 참고서류를 기초로 한국어(언어소통) 능력, 인성·품성, 기본소양, 소질·적성, 전공기초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약 10분 간)
- 3) 실기고사는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문예창작학, 패션디자인학, 사회체육학 제외)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실기 작품 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간단한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체능분야 모집단위 개설전공 실기고사 세부 내용

모집단위	개설전공	실기고사 내용
예체능 분야	음악예술 융합학	* 자유곡 2곡을 암기하여 연주
	사진미디어학	* 수험생 본인이 직접 촬영한 흑백.컬러.디지털 사진 중 한 가지를 선택, 각각 다른 사진을 확대사이즈 8"×10"로 인화하여 총 10매 제출
	만화애니 메이션학	*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자유양식의 포트폴리오 제출
	영상디자인학	* 수험생이 영상디자인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내용의 본인 작품 1점 이상으로 구술평가

7. 선발 방법

가. 합격자 결정 : 모집단위별로 지원자의 면접(실기)고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심사하고, 우리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나. 불합격 처리

- 1) 지원자격 미달자(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2)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3) 면접(실기)고사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입학 취소 처리

-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 2)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 1) 일시 : 2026. 11. 20.(금) 18:00예정
- 2) 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scnu.ac.kr/iphak/main.do) 게재 및 개별통보

나. 등록금 납부 및 등록

- 1) 기간 : 2027년 2월 중
- 2) 장소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다. 등록금 환불

국립순천대학교에 등록한 자가 등록포기를 원할 때에는 2027. 2월 등록금 납부일 ~ 2027. 2. 28(목) 16:00까지 (토, 공휴일 제외) 입학처(☎061-750-5503)로 문의

9. 지원자 유의 사항

가. 일반 사항 유의 사항

- 1)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scnu.ac.kr /iphak/main.do)를 통해 공지합니다.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시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지원과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전화 연락 두절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 3) 입학전형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4) 입학허가 후라도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입국허가가 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나. 원서 접수 유의 사항

- 1) 우리 대학교 입학원서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2) 입학원서 도착지연, 제출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해당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3) 입학지원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 4)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5) 접수된 입학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입학원서, 제출서류 등 우편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사고 (미도착, 지연도착)발생 시 대학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도착여부를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7)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다. 대입지원방법 유의 사항

-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타 대학 및 우리 대학교의 다른 모집 시기(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한 모든 대학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3)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4)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2개 이상의 대학에(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10. 기타 사항

- 1) 본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사항은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기타 궁금사항은 국립순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scnu.ac.kr/iphak/main.do) 참조 및 입학처(☎061-750-5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모집단위					접수번호					
지원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학력	년		월	일	~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 . 예정)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추가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1					보호자 연락처2				
지원자격	① 국외 파견 재직자 () ② 현지 취업자 () ③ 현지 자영업자 () ④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⑤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⑥ 북한이탈주민 () ※ 해당사항에 (○) 하세요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상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날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										

학력조회 동의서

성명	(한글)	(영문)	(모국어)
모집단위	학부/과/전공		

과정	표기	학교명	학교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고등학교	한국어			
	영어			
	모국어			

- ※ 영문 학교명과 주소는 반드시 기재.
-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반드시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 (예) 82 ~ 61 ~ 750 ~ 1234
- ※ 상기 자료는 지원자 학력조회 용도로 사용할 자료이오니 정확히 기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학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날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포함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포함 Yes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 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 · 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인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며, 수집항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 전반

2. 수집항목

이름(성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E-Mail), 보호자(성명/관계/직업/연락처 등), 학교정보(출신학교/성적/재학기간 등) 및 성적, 어학성적 등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전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수험번호 : *

지원자 성명		
재 정 보 증 인	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지원자와의 관계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부'와 '모'를 원칙으로 함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붙임자료

1. 예금잔고 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수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재정보증인 성명 : _____(서명 또는 날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